#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40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권영진·서범수·인요한

엄태영 • 조지연 • 윤영석

박충권 • 이만희 • 김희정

조승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6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중앙정부의 세입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24%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1만분의 1,924"를 "1만분의 2,224"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부세의 재원에 관한 특례) 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 총액의 비율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는 1만 분의 2,024로, 2026년에는 1만분의 2,124로 하고, 2027년부터 1만분 의 2,224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1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			
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			
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			
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			
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			
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	<u>1</u>		
<u>만분의 1,924</u> 에 해당하는 금	만분의 2,224		
해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